

#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부서 : 경상북도 복지건강국

### 2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년 1월 15일, 김희수 의원 외 12명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월 17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
(2024년 1월 29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### 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희수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인력임에도 인사·복무 등은 개별 법인의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어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음.
-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처우개선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규정함 (안 제8조).

- 사회복지시설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의2).

#### 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조영진)

##### □ 개정이유

- 본 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잦은 이직에 따른 전문성 저하 및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와 서비스 질을 향상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과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의 다른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자 제안함.

##### □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8조는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신설 규정함.  
경상북도에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22년 165개 시설에 28명의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있고, 2023년 12월말 기준 178개 시설에 28명의 대체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.

#### 22~'23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(국비보조) 실적

- 사업예산 집행행 실적(단위 : 천원)

2022년			2023년 12월말			비 고
예산	집행액	집행률	예산	집행액	집행률	
893,279	837,783	93.8	934,743	860,832	92.1	

- 파견실적

연도	대체인력(명)			파견실적(개소, 건)		비 고
	계	돌봄직	조리직	파견 시설 수	파견건수	
2022년	28	25	3	165	2,679	
2023년 12월말	28	26	2	178	3,065	

따라서, 한정된 인력과 예산 범위에서 종사자들의 병가, 교육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을 예방하여 서비스 연속성 확보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안 제8조의2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.
  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제2항1)에 따르면 “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 고 규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.
  - 다만,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해서는 우선, ‘이용시설과 생활시설별 직급의 단일화’, ‘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종사자간의 업무수행의 강도 및 서비스 수준 차이’, ‘개별 시설별 다른 임금체계에 따른 차이나는 임금 보전 문제’, ‘부족한 재원에 대한 경북도와 시군의 부담 문제’, ‘개별 법인의 독립된 임금체계’ 등 많은 선결과제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.

1)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그러나 서울시, 대구시가 이미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 최근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-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도와 시군의 비용 부담 문제 등 논의를 거쳐 도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 본 개정안이 보수체계 일원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.

#### 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과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관련 입법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의견, 그리고 시설종류별 종사자와 시설장 등 각각 상반되는 주장 등을 면밀하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, 재정부담에 대한 경상북도와 재정여건이 상이한 시군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세밀한 준비와 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(참고자료)

###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추진현황

사 업 명	추진현황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 업 비 : 20,107백만원(도비 6,162, 시군비 13,945)</li> <li>• 대 상 : 14,239명(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)</li> </ul>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 업 비 : 934,743천원(국비 654,320, 도비 280,423)</li> <li>• 목 적 :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 질적 저하 예방 및 업무공백 최소화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</li> <li>• 위탁기관 :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</li> </ul>
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 업 비 : 163,000천원(도비 150,000, 자부담 13,000)</li> <li>• 위탁기관 :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</li> <li>• 주요사업 :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, 위기대응지원사업, 심리지원사업, 연수 및 교육지원 사업,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</li> </ul>
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행근거 :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</li> <li>• 목 적 :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실태 조사·분석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</li> <li>• 조사주기 : 3년</li> <li>• 조사기간 : 2023. 3. ~ 10월(경북행복재단)</li> </ul>
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 구성·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설치근거 :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</li> <li>• 위원구성 : 2023. 2.</li> <li>• 위 원 수 : 13명(당연직 1, 위촉직 12)</li> <li>• 운영실적 : 회의개최 1회(2023. 10.)</li> </ul>